Korean 한국어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

주 청문회 정보

주 청문회에는 귀하, 캘리포니아주 사회사업국의 행정판사 및 카운티 대표가 출석할 것입니다. 이는 법정 청문회가 아니며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.

청문회에서 행정판사에게 귀하가 카운티와 의견 차이를 갖는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. 카운티 대표는 해당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그 조치가 올바른 것이었음을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. 귀하와 카운티 대표는 서로 질문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, 출석한 증인들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 행정판사 역시 모든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

귀하가 카운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증하거나 반박할 모든 기록을 청문회에 가지고 오십시오. 귀하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는 서면 설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.

카운티는 청문회에서 귀하의 케이스에 대하여 카운티에서 취한 조치 및 그 이유를 설명하는 타자된 입장 설명서를 제시할 것입니다. 귀하는 청문회 날짜 2 근무일 전까지 업무 시간 중 언제든 이 설명서를 찾아 올 수 있습니다. 찾으러 가기 전에 카운티 민원과에 전화를 걸어 이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. 카운티의 입장 설명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카운티에서 귀하에게 이 서류를 제공한 후 서류의 내용을 상당 부분 변경한 경우에는 청문회를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.

귀하에게는 청문회 전에 케이스 기록 및 규정을 살펴 볼 권리가 있습니다. 카운티 민원과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검토를 위한 일정을 잡으십시오. 요청시, 영어로 된 케이스 기록에 대해 통역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귀하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하거나 귀하를 대변하는 다른 사람을 출석시켜야 합니다. 다른 사람을 출석시킬 계획이라면 동봉된 양식 DPA 19를 작성하여 청문회 날짜 전에 주 청문국(SHD: State Hearing Division)에 보내야 합니다. 귀하는 물론 귀하를 대신하여 아무도 청문회에 안 나타나면서, 여전히 청문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청문회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다시 열것을 요청해야 하며 출석하지 못한 데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.

청문회 전에 언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청문국에 알린 경우에는 귀하 및 다른 참석자를 돕기 위해 통역자가 청문회에 참석할 것입니다. 이 때 귀하에게는 어떠한 비용도 부과되지 않습니다.

지체로 인해 귀하의 청문회가 늦게 시작할 수도 있으며 청문회장에는 탁아 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.

청문회를 신청한 후, 그러나 청문회가 열리거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사를 한 경우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인 1-800-743-8525 (음성/TDD)로 전화하여 주 청문국에 귀하의 새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.

연기

청문회를 연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 전에 위의 수신자 부담 전화로 주 청문국에 연락하여 연기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. 푸드 스탬프에 관한 청문회의 경우, 첫 번째 연기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. 연기 신청이 허가되면 청문회 일정이 다시 잡히고 보류 중인 보조가 계속됩니다.

가정 청문회/전화 청문회

나쁜 건강 상태나 장애의 이유로 인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가정이나 전화를 통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. 가정 청문회를 갖기 위해서는 진단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가정 또는 전화 청문회를 신청하려면 예정된 청문회 날짜의 최소한 10일 전에 가장 가까운 주 청문국 사무소(이 문서 끝에 사무소 및 전화 번호가 나열되어 있음)에 전화를 걸어 귀하의 사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.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인 1-800-743-8525 (음성/TDD)로 전화하십시오.

소환장

귀하의 케이스에 중요한 사람이나 서류를 청문회에 유치하고 싶은 경우에는 소환장 발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청문회 날짜 전에 소환장을 신청하려면 이 문서 끝에 나열된 주 청문국 사무소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전화하십시오.

주재하는 행정판사가 소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. 소환될 사람이나, 어떤 서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기록의 보유자(예: 은행, 신용 조합, 병원 등)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.

청문회 후

청문회가 끝난 뒤 행정판사는 국장에게 제안된 판결을 보내거나 국장을 대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. 제안된 판결을 받으면 국장은 그러한 제안된 판결을 채택하거나, 추가 청문회를 명하거나, 국장 자신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. 국장이 자신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것이 최종 판결이지만 귀하에게도 행정판사의 제안된 판결에 대한 사본이 전해 집니다. 판결이 내려지면 카운티는 즉시 그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. 귀하에게 불리한 판결의 경우 귀하께서 수령하고 있던 보류 중인 보조가 중지됩니다. 또한, 카운티는 보류 중인 보조로 지불된 초과 현금 보조나 푸드 스탬프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귀하가 받으신 판결문의 맨 앞 페이지에 귀하의 항소 권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

주 청문회 사무소

- State Hearings Division, 744 P Street, M.S. 19-44, Sacramento, CA 95814 (전화: 916-229-4187);
- State Hearings Division, 1515 Clay Street #1203, Oakland, CA 94612 (전화: 510-622-4000);
- State Hearings Division, 811 Wilshire Boulevard #1118, Los Angeles, CA 90017 (전화: 213-833-2200);
- State Hearings Division, 355 West Grand #4, Escondido, CA 92025 (전화: 760-735-5070); 또는
- State Hearings Division, 2550 Mariposa Mall #3088, Fresno, CA 93721 (전화: 559-445-5775).

STATE OF CALIFORNIA
(캘리포니아주)
주지사 Arnold Schwarzenegger

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
(보건후생부)
주 보건후생부 장관 Kimberly Belshé

DEPARTMENT OF SOCIAL SERVICES
(사회사업국)

PUB 412 (Korean) (4/04)